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504-220013-14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길잡이



열린 토론 바른 선택

후보자 토론회, 정책선거의 중심입니다.

용어의 표기

◎ 법규명

공직선거법 → 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규칙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 → 규정

◎ 위원회명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중앙토론위원회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시·도토론위원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구·시·군토론위원회

◎ 토론회명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 → 토론회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바로 알기  mp4

- 본 책자의 주요 내용을 요약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길이 : 18분 49초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YouTube



CONTENTS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길잡이

제1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조직 및 직무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근거와 지위	11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11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무	12

제2장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토론

1.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17
2.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17
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개요	19

제3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 준비 및 진행 절차

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통지	25
2. 초청 후보자 선정	26
3. 사회자 선정	29
4. 토론주제 선정	29
5. 질문사항 선정	30
6. 토론진행방식 결정	31

7. 설명회 개최	33
8. 토론회 진행 및 질서유지	35
9.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37

제4장

후보자의 토론회 참석

1. 참석확인서 제출	43
2. 설명회 참석	47
3. 토론 진행방식 숙지	50
4. 토론회 방송 준비(이미지 메이킹)	52
5. 토론회장 도착	55
6. 리허설 및 최종 점검	56
7. 토론회 진행	57

제5장

참고자료

1.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예시	60
2. 토론진행표(큐시트) 예시	63
3. 사회자 대본 예시	65
4. 선거방송토론 법규	71





2022. 6. 1.(수)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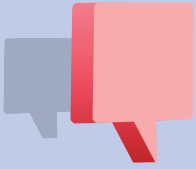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 1.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18. 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3.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 일전 30일 : 5.2(월)]	법§53①②
3. 3. 부터 6. 1. 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0. 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2. 부터 6. 1. 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0. 부터 5. 14. 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12. 부터 5. 13. 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5. 18. 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19.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19. 부터 5. 31. 까지	목 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
5. 20. 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첨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5. 20.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5. 22.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5. 27. 부터 5. 28. 까지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	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법 제10장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 규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조직 및 직무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근거와 지위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무



재장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조직 및 직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1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조직 및 직무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근거와 지위

- 토론위원회는 법 제8조의7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토론회'와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하는 상설기구이다.
- 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 관련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2005헌마415, 2006. 6. 29.).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 토론위원회는 법 제8조의7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응하여 중앙, 시·도, 구·시·군 3단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2022년 4월 1일 현재 중앙토론위원회를 비롯하여 17개 시·도토론위원회와 249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토론위원회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정당, 공영방송사 및 그 외 지상파방송사,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의 다원주의적 구성으로 공정성을 확보한다(법 58의 7②).
 - 중앙: 11인 이내
 - 시·도 및 구·시·군: 9인 이내

- 관련 법규에 따라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임기(3년)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독립성을 담보한다(법 §8의7②, ⑤; 규칙 §9, §10).
- 각급 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구·시·군 토론위원회 위원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직),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한다(법 §8의 7③, 규칙 §8).

< 토론위원회 검토 및 의결기구 >

구분	구성요건	분야
위원회의	토론회 관리일정에 따라 법정의결사항 또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마다 개최	의결사항에 대한 결정
소위원회	전체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구성	사회자, 주제 및 질문사항, 진행방식 등 사전 검토
전문(자문) 위원	토론회 진행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필요에 따라 구성	주제 및 질문사항, 진행방식 등 자문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무

가. 법정 사무

- 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에 관한 사무
 - 대통령선거
 -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나. 토론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무

- 전국고등학생·대학생 대상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 유권자의 날 기념 ‘민주시민 토론교실’
- 선거방송토론 진행방식 및 제도연구
- 토론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및 후원 등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심포지엄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민주시민 토론교실





제2장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토론



1.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2.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개요





제2장은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토론회 관련 주요 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선거에서 각급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는 선거공영제의 한 부분으로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독특한 특징이다.
- **후보자**에게 선거방송토론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하며 기존 지지층의 표심을 강화하고, 부동층 유권자 등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이다.
- **유권자**에게 선거방송토론은 선거운동 기간에 한 장소에 모인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자질 등을 직접 비교 평가함으로써 여과되지 않은 생생한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정보원의 하나이다.

2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 선거방송토론은 법 제8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선거별로 각급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와 제8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앙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주요 정당의 정책토론회로 구분된다.
 - ※ 중앙토론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 2회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각급 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

주 관	종류	선거	개최시기	횟수	근거
중앙	토론회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법 §82의2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이상	
	정책토론회	임기만료 선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일까지	월1회 이상	법 §82의3
	정당정책 토론회	-	연중 (단,공직선거의 선거일전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제외)	연2회 이상	「정당법」 §39
시·도	토론회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	법 §82의2
		교육감선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49
구·시·군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 연설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	법 §82의2

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개요

가. 위원회별 주관 토론회

구분	내용
시·도토론회위원회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구·시·군토론회위원회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나. 개최근거 :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다. 개최시기 : 선거운동 기간 중(2022. 5. 19. ~5. 31.)

라. 개최횟수 : 1회 이상

마. 개최시간 : 1회 120분 이내

바. 개최장소 : 중계주관방송사 스튜디오(여건상 어려울 경우 외부시설 이용)

사. 개최방법 : 텔레비전방송을 통한 중계방송

-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법 §82의2⑩).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공영방송사 또는 지상파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법 §82의2⑩).

방송사 관련 용어 정리

- 공영방송사 :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
- 지상파방송사업자 : 방송을 목적으로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사업을 하는 사업자(KBS, MBC, SBS, EBS, CBS, 교통방송 등)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LG헬로비전, 티브로드, C&M, CMB, 현대HCN 등)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지상파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IPTV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등의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 대교어린이TV, tvN, 코미디TV등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아. 중계방송 방법

1) 생방송을 원칙으로 한다(규칙 §27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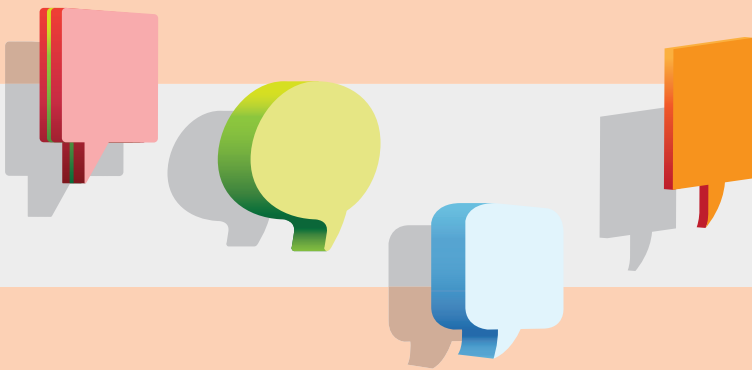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 녹화방송의 경우 내용은 편집할 수 없다.


2) 각급 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법 §82의2②).



< 토론회 초청 기준(법 582의2 ④) >


선거	초청 기준
<p>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여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의 선거를 말함. •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 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p>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 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p>교육감선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여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의 선거를 말함. •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 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제3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 준비 및 진행 절차

- 
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통지
 2. 초청 후보자 선정
 3. 사회자 선정
 4. 토론주제 선정
 5. 질문사항 선정
 6. 토론진행방식 결정
 7. 설명회 개최
 8. 토론회 진행 및 질서유지
 9.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제3장은
토론위원회의 토론회
준비 및 진행 절차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관_토론회 주요 사무 절차



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통지

가. 각급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및 중계주관방송사 등을 결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2022. 5. 19.)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중계방송사, 초청후보자에게 통지한다(규칙 §23①).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지정할 정당에 통지

나. 후보자(정당)를 미리 알 수 있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시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다. 통지 내용

- 1) 개최 일시·장소, 중계방송방법 등(녹화방송의 경우 중계방송일시 등 포함)
- 2) 초청후보자(정당)에 통지 시 '참석확인서' 또는 '불참사유서' 제출기한과 불참 시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 본 책자 43쪽 "1. 참석확인서 제출" 참조

2 초청 후보자 선정

가. 시 기 : 선거기간개시일(2022. 5. 19.)까지

나. 선정대상 : 법 제82조의2제4항에 규정된 선정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

다. 선정방법 : 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라. 선정기준 및 방법

선정기준(법 §82의2 ④)		확인방법
국회 의석수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정당별 의석수 현황 (국회 홈페이지)
직전선거 정당 득표율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당해 선거의 선거록 또는 총람
최근 4년 이내 선거의 후보자 득표율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 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당해 선거의 선거록 또는 총람 ※ “후보자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의 선거를 말함.
언론기관 여론조사 공표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 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

1) 초청 후보자 선정기준 중 언론기관 여론조사 관련 질의회답

- 언론기관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하여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한”이란 용어의 의미는 “평균”이란 수의 개수나 양의 크고 작은 차이없이 고르게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1개의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라도 다른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없다면 그 조사결과와 지지율이 평균이 될 것임(2005. 4.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특정후보자에 대하여 여론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4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2005. 4.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 여론조사 결과 반영기간 :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2022. 4. 19. ~ 5. 18.)의 사이에 실시·공표한 여론조사

3) 언론기관의 범위(규칙 §22)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 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마.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1) 각급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법 §82의2⑤).

※ 이 경우 개최시간은 초청 후보자 토론회 개최시간 이내에서 후보자의 수를 고려하여 해당 토론위원회가 결정

2) 각급 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참석확 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 등이 동의하면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규칙 §23㉔).

3 사회자 선정

가. 시 기 : 토론회 개최일전 5일까지

나. 자 격 :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한 사람(규칙 §23③)

※ 선정된 사회자로부터 '사회자 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 받는다.

다. 선정방법

1) 추천 : 해당 토론위원회 각각의 위원이 사회자 후보를 추천한다.

※ 필요시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규정 §2①)

2) 선정 : 추천명단 중에서 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 필요시 소위원회에서 사회자 후보군을 검토 할 수 있다.

4 토론주제 선정

가. 시 기 : 토론회 개최일전 5일까지

나. 선정절차

1) 여론조사, (지역)언론 보도, 정당·지자체·후보자 홈페이지(공약사항) 게시 내용 등 자체 수집,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통해 토론의제를 수집하여 토론주제 선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2) 필요시 전문(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한다.

3)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주제(안)을 작성·검토한다.

4) 토론회 참석 후보자의 수 및 토론진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토론위원회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 1개 이상의 예비 주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 주제 공개 : 선정된 주제는 토론회 개최 공표 및 설명회 개최 시 공개

5 질문사항 선정

가. 주제 선정 후 해당 주제의 질문사항을 작성하여 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선정한다.

나. 유권자의 관심이 많고 지역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찬반 쟁점이 뚜렷한 사항을 위주로 질문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하되, 토론방법 등에 따라 질문사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규정 §5②).

질문자의 선정(규정 §3)

- 각급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다.
- 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토론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 질문자는 해당 토론회 시작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후보자 또는 후보자 관계자와 토론회 관련 정보나 의견을 교환할 수 없다.

6 토론진행방식 결정

가. 원칙적으로 **초청 후보자 모두**를 초청하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나. 토론회의 형식

- 1)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후보자 등이 답변하는 방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 간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자가 일정시간 동안 토론 진행의 권한을 가지고 토론하는 형식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 또는 토론주제 관련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 2) 후보자 간 발언시간은 균등하게 배정되어야 한다.
- 3) 구체적인 진행방식과 시간·방법 등은 해당 토론위원회 위원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다. **각급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개최일 전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규칙 §28①).

- 1) 참석 후보자의 수가 정해진 후에 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예상 토론자의 수를 고려하여 미리 결정할 수도 있다.
- 2) 토론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통지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참석할 토론자 수가 달라져 진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규정 §4③).

< 토론형식개관(예시) >

진행단계	토론형식	비고
토론회 개시	▶ 시작발언	후보자의 출마의 변, 핵심공약 등
본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문제제기) 질문/답변 【질문자 및 질문 유형】 • 사회자 : 공통질문 / 개별질문 • 유권자 : 공통질문 / 개별질문(영상질문형) • 후보자 : 개별질문 	<p>사회자 등 주제 질문자의 질문 (선거 주요 쟁점, 정책 현안 등)에 후보자들이 답변하는 방식</p> <p>유권자에게 주제 관련 각 후보자의 기본 입장 및 정책 대안 등에 대한 개괄적 정보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상호토론 • 공약검증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공약발표 후 1:1 자유토론 - 후보자 공약발표 후 개별질문 - 후보자 공약발표 후 개별·보충질문 • 주도권토론 • 시간총량제토론 	<p>후보자토론회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질문/답변, 반론/재반론 등을 통해 후보자간 직접 토론하는 방식</p> <p>주제 관련 후보자간 기본 입장 및 정책 대안 등의 차별성 부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형(사회자 질문 → 후보자 상호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 사회자 공통질문 후 주도권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p>후보자토론회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사회자 등 질문자의 질문에 후보자들이 답변한 후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토론하는 형식</p> <p>주제 관련 각 후보자의 기본 입장 및 정책 대안 등의 차별성 부각</p>
토론회 종료	▶ 마무리발언	지지호소, 발언내용 정리·보완 등



7 설명회 개최

가. 각급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1) 설명회 개최 시기는 토론 주제·진행방식 등을 공표한 이후로 하며, 참석 후보자가 토론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2) 설명회에는 후보자 본인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대리인(후보자 위임장 제출)이 참석할 수 있다.

나. 안내 사항

- 1) 토론회 개최일정, 참석 후보자 및 사회자
- 2) 토론 주제·진행방식
- 3) 후보자 준수사항
- 4) 토론회의 질서유지(출입제한 등)
- 5) 기타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토론회 당일 일정, 분장이 필요한 후보자 확인, 토론자의 착용·부착물 및 지참물 관련 등
 - 토론회장 내 반입이 불가한 물품, 질서유지(방청객 제한, 출입증 배부 등)
 - 방송사 위치 및 주차장 안내



주요 안내 사항

① 어깨띠 등 착용

- 방송화면으로 송출되므로 가급적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함.
-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윗옷, 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음(규정 §8).

② 참고자료 사용 관련

- 토론회에서는 A3 용지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규정 §9①).

③ 전자기기 사용

-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음(규정 §9①).
- 다만, 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전자기기를 제공한 경우 토론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음(규정 §9②).
- 전자기기의 종류,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토론위원회가 정함(규정 §9③).

6) 토론회장의 설비내용 안내

- 무대 위에서 후보자 및 사회자 등의 위치
- 후보자와 사회자 대기실 및 분장실 등

7) 후보자가 불참한 경우

- 토론회장 후보자 자리 등 설비 방법 : 후보자가 불참을 통보하여 오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자리를 설비하지 않으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리 등을 철거할 수 있다(규정 §6③).
- 발언순서 등 : 불참한 후보자의 다음 순서가 순차적으로 앞당겨지며, 토론회 방송이 시작된 후에 도착할 경우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순서 추천

- 1)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순서는 추천에 의하여 결정한다(규칙 §23⑤).
 - 후보자가 대리인에게 추천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천할 수 있다
- 2) 먼저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추천순서를 추천하고, 추천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순서를 추천한다.
- 3) 추천결과는 변경할 수 없다.

참고사항

-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순서는 일괄하여 추천한다.
- 개별질문 활용 시 후보자별로 질문할 주제를 사전 추천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8 토론회 진행 및 질서유지

가. 토론회의 진행

- 1) 후보자는 토론회에서 A3 용지 규격(가로 42cm, 세로 29.7cm)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규정 §9).
 -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전자기기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 A3 용지 규격의 참고자료 사용 시 두 장 이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스튜디오 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코팅은 하지 않는다.

- 2) 토론회는 토론진행표(규시트)에 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규정 §10①).
- 3) 후보자는 토론회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각급 토론위원회는 초청 후보자가 불참 하거나 참석 후보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한다(규정 §10③, ④).
- 4) 발언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며, 후보자가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사회자가 중지를 요청하거나 해당 후보자의 마이크를 음소거할 수 있다(규칙 §30①).
- 5) 명백하게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위원은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규칙 §30②).
- 6) 후보자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한다. 그 명령에 불응 하는 경우에는 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규칙 §30③).

나. 질서유지

- 1) 토론회 참석 후보자를 제외하고 토론회장에는 출입증을 패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 2) 방청을 허용하는 경우 방송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입증을 후보자 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발급한다.
- 3) 청중이 있는 경우 청중은 토론회 진행 중에 박수를 치거나 말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규정 §7②).

9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가. 개최 요건

- 1)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규칙 §24①).
 - 초청 후보자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명뿐이거나 5명 이상인 경우
 -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초청 후보자의 수가 초청 후보자수의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
 - 기타 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 요건 중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공영방송사·지상파방송사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 시설·장비의 불비 등을 이유로 연설회만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온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2)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초청후보자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초청후보자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그 수가 한 명일 경우에 한한다(규칙 §23⑧).

나. 개최 방법

1) 개최일시 등 결정·통지

-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사유 발생 시에는 개최일시·장소 및 중계주관방송사, 연설시간, 후보자명을 결정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주관방송사에 통지한다(규칙 §24②).

※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통지한 후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다시 통지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 후보자의 연설시간은 중계방송시간 이내에서 후보자의 수를 고려하여 후보자
마다 10분 이내로 결정한다(법 §82의2③).

2) 사회자 선정

-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한 자 중에서 연설회 개최일전 2일까지 선정한다(규칙
§23③).

※ 토론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연설순서 추천

- 설명회 개최 시 또는 연설회장에서 추천한다.

연설순서 추천 방법(규칙 §24④)

- 먼저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추천순서를 추천하고 추천순서에 따라 연설순서를 추천
-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후보자 위임장 제출)이 추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론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천

4) 합동방송연설회의 진행

- 사회자는 연설회 방송 시작 시 개시를 선언하고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연설
시간·진행요령 등을 공표한다.

- 사회자는 후보자가 연설하기 전에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함) 및 성명을 소개한다.

- 연설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며, 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사회자가 제지를 하거나 마이크를 음소거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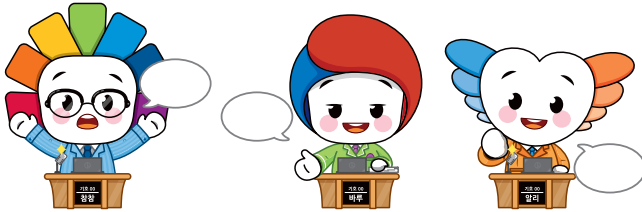
- 사회자는 마지막 후보자가 연설을 마치면 연설회 종료를 선언한다.

- 후보자가 연설할 때에는 후보자(수어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사를
포함)이외에는 누구도 방영되게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으로 표기) 및 성명을 방송자막으로 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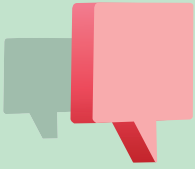
5) 기타: 개최공표·홍보, 질서유지 관련사항 등은 토론회의 경우를 준용한다.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제4장



후보자의 토론회 참석



1. 참석확인서 제출
2. 설명회 참석
3. 토론 진행방식 숙지
4. 토론회 방송 준비(이미지 메이킹)
5. 토론회장 도착
6. 리허설 및 최종 점검
7. 토론회 진행



제4장은
후보자의 토론회 참석
절차와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관_토론회



1 참석확인서제출

가. 토론회위원회로부터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통지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2022. 5. 20.)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23②).

- 참석확인서 미제출, 불참사유서 제출 : 기한 내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토론회 참석 포기 의사는 변경할 수 없다.
- 참석확인서 제출 후 불참 : 토론회 개최일 다음 날까지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책자 45쪽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및 46쪽 '대담·토론회 불참사유서' 참조

나. 제출한 불참사유서를 토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함)·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이 시작되는 때에 사회자의 멘트와 방송자막으로 고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며(법 §82의2⑥),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261③).

 용어의 이해 : ‘대담’과 ‘토론’(법 §81②)

- 대담 :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
- 토론 :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개최일시

3. 대담·토론회 참석자

가. 참석자별 : (후보자)·(대담·토론자)

나. 성명

다. 생년월일(성별)

위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대담·토론자) ○○○ 인]
	○○○ 당 대표자 ○○○ 직인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 주 1.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대담·토론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석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대담·토론회 불참사유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후보자)·(대담·토론자) 성명

위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불참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증빙자료 ○부

년 월 일

[(후보자)·(대담·토론자)	○○○	인]
[○○○ 당 대표자	○○○	직인]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 주 1.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불참사유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설명회 참석

가.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는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나 (후보자의 위임장 제출) 가급적 후보자가 참석한다.

※ 본 책자 49쪽 '대담·토론회 좌석(발언순서) 추첨 위임장' 참조

2) 설명회에 참석한 후보자는 안내 내용을 숙지한다.

※ 설명회에 후보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는 설명회에 참석한 대리인으로 부터 토론위원회가 안내한 내용을 반드시 전달받아야 한다.

☞ 대리인으로부터 진행방식, 발언순서, 후보자 준수사항 등을 전달받지 못해 후보자가 토론회 현장에서 당황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을 유의



설명회 내용

- 토론회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 토론회 참석후보자 및 사회자
-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 토론회장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순서 추첨
- 토론회 진행 시 후보자 준수사항
- 기타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토론회 당일 일정, 분장이 필요한 후보자 확인, 토론자의 착용·부착물 및 지참물 관련
 - 토론회 개최 장소 위치 및 주차장 안내
 - 토론회 개최 장소 출입자 제한, 후보자의 수행원 출입증 발행, 토론회장으로 반입이 불가한 사항
 - 토론회장 무대 위 후보자와 사회자 위치, 후보자 대기실 및 분장실 위치

나.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 순서 추첨(규칙 §23⑤)

- 1) 후보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한다.
- 2)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추첨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 3) 먼저 **후보자의 기호 순**에 따라 추첨순서를 추첨하고, 추첨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순서를 추첨한다.



설명회 개최 : 토론자 자리와 발언순서 추첨 및 공표



대담·토론회 좌석(발언순서) 추천 위임장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후보자와의 관계 :
5. 연 락 처 :

위의 사람에게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
있어 토론자의 좌석(발언순서) 추천을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후보자) ○○○ (인)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3 토론 진행방식 숙지

가. 토론 진행방식의 이해

- 1) 설명회에는 후보자가 직접 참석하여 진행방식 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
- 2) 부득이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대리인은 후보자가 진행방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전달한다. 진행방식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토론위원회에 문의한다.



부적절한 사례

- ○○후보자는 설명회에 참석한 대리인이 진행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토론회 당일 토론 현장에서 물어봄.
- ○○후보자는 토론 진행 도중 사회자에게 토론 진행방식을 물어봄.

나. 주요 토론형식

사회자 공통질문·개별질문

- 사회자 '공통질문'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모든 후보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며, '개별질문'은 후보자별로 각각 다른 내용으로 주어지는 질문임.
※ 토론회 개최 전 설명회에서 추첨에 의해 각 후보자의 자리 및 발언순서가 정해지므로 자신의 답변순서 등을 확인해 둔다.

후보자 주도권토론

- '주도권토론'은 후보자들이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번갈아가며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토론 진행의 권한을 갖고 상대 후보자를 지명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임.
※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주도권이 부여된 후보자의 총 발언시간에서 차감되며, 상대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야 함에 유의

시간총량제토론

- ‘시간총량제토론’은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총 발언시간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상호토론 방식임.
- ※ 시간총량제토론에서 첫 번째로 발언할 후보자를 사전추첨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거수 등으로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발언함.

혼합형

(사회자 질문 + 주도권토론 또는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 또는 개별질문과 후보자 주도권토론 또는 시간총량제토론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선거방송토론에서 주로 사용됨.

공약검증토론

- ‘공약검증토론’은 후보자가 토론 분야나 주제에 대해 주어진 시간 동안 자신의 대표 공약을 발표하고, 발표한 공약에 대해 다른 후보자들과 질문·답변, 반론·재반론 등을 통해 상호토론을 하는 방식임.
- ※ 공약발표 후 상호토론에서는 질문·답변 순서와 시간이 정해진 형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후보자간 1:1 시간총량제토론 방식도 활용되고 있음.

시작발언·마무리발언

- 시작발언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자별로 출마의 변, 핵심 공약 등을 알리는 지지 호소 연설
- 마무리발언 : 토론회 종료 직전 후보자별로 토론 과정에서 주장했던 주요 내용을 보완·강조하며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
- ※ 특히 시작발언과 마무리발언은 주어진 시간 안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연습

※ 녹화영상 등을 통해 유권자가 직·간접적으로 질문하는 토론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토론회 방송 준비(이미지 메이킹)

가. 의상

- 1) 정장 등 선거방송토론에 적합한 의상을 선택하되, 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윗옷, 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규정 §8).
- 2) 의상의 색상, 무늬, 질감을 고려하여 다음의 의상은 텔레비전 방송의 특성상 피하는 것이 좋다.
 - 검정색과 흰색 또는 지나치게 밝은 색
 - 잔 체크 무늬나 가는 줄무늬가 들어간 의상이나 넥타이 등
 - 스튜디오 조명에 반사되는 질감의 의상
 - 토론회장 세트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의 의상

나. 비언어적 표현

- 토론회를 시청하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내용 및 전달력 등 ‘언어적 표현’ 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시선, 제스처(몸짓·손짓) 등 ‘비언어적 표현’(몸짓 언어) 또한 중요하다.

1) 시선

- 자신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직시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수많은 유권자들 과의 눈 맞춤을 의미하며, 이는 선거방송토론에서 매우 중요한 비언어적 표현 수단이다.
 - ※ 카메라가 촬영을 시작하면 ‘탈리 램프’¹⁾가 들어온다.
- 특히, ‘시작발언’과 ‘마무리 발언’ 그리고 중요한 점을 강조할 때는 카메라를 직시한다.

1. 탈리 램프(tally lamp) : 생방송 또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 시 촬영하는 카메라를 출연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카메라의 위쪽이나 앞쪽에 부착하는 램프. 카메라가 촬영을 시작하면 빨간색 불이 켜짐.

- 그 밖에 토론 중에는 상황에 맞게 사회자 또는 상대 후보자를 보며 발언을 한다.
- 시선을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는다.

2) 표정

-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을 유지하며, 흥분하거나 당황하는 표정을 짓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신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 확신에 찬 표정을 짓는다.



토론회 준비 사례

- ○○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TV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방송국 스튜디오를 빌려 실제 상황과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 실전처럼 연습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캠퍼터를 설치하여 직접 본인의 모습 등을 찍어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토론을 준비하였다.

3) 자세

- 앉은 자세는 대개 정자세로 정면을보는 것이 좋다.
- 말할 때의 바른 자세는 몸의 긴장을 풀고 허리를 세우는 것이 좋다. 약간의 손 동작이 가미되면 자연스럽게 보이나, 지나친 경우 산만한 느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좌식토론의 경우 상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체를 의자 등받이에 밀착하며, 입식 토론의 경우에는 다리의 움직임도 고려해야 한다.

4) 말하기 속도, 목소리의 높낮이

- 방송에서 말을 할 때에는 속도와 목소리의 높낮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말이 너무 느리면 시청자들이 지루하게 느껴 채널을 돌릴 수 있고, 말이 너무 빠르면 시청자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

- 방송에서는 긴장하여 말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약간 느린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 마이크를 착용했을 때는 평상시 말하는 크기로 하는 것이 좋다.
- 발음이 명확하도록 신경을 써야하며, 장모음·단모음 등의 유사단어를 구분해야 한다.

5) 제스처

-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몸짓과 손짓은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비언어적 표현 수단이다.
- 양손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이 좋다.
- 발언 내용에 맞는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너무 큰 동작이나 헛기침, 머리를 만지는 행위, 땀을 손수건으로 닦는 행위는 지양한다.
- 몸동작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산만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경직된 인상을 줄 수 있다.
- 특히 상대 후보자에 대한 제스처는 오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참고사항

토론을 하면서 양손의 처리는 후보자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양손의 움직임 등 자신감 있는 제스처로 자신의 이미지를 완성한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5 토론회장 도착

가. **토론회 개최 장소**에는 교통체증 가능성, 분장 및 리허설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토론위원회에서 안내한 시간보다 여유있게 도착한다.

나. 방송국 분장실에 분장을 하고 후보자 대기실에 들어가면 **차분한 마음으로 복장 등을 최종 점검**한다.

※ 대기실에서 스튜디오로 이동하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온다.

다.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사회자 및 상대 후보자와 인사를 하면서 긴장을 푼다.

스튜디오 입실 후 확인할 기본사항

- 추첨순서에 의한 본인의 자리 위치
- 참고자료 규격(A3 용지규격 이내)
- 카메라 및 발언시간 타이머 위치 등

라. **토론회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시 확인·점검**한다.

- 후보자는 토론회에서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규정 §9).
※ '보조도구'인 참고자료를 활용할 때는 원고를 읽듯이 들고 읽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마. **토론회장 자리 배치**

- 후보자와 사회자의 자리는 후보자 수, 스튜디오 환경, 토론진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 후보자와 사회자의 자리 배치 예시 >



마주보는 구조(좌식)



마주보는 구조(입식)



삼각형 구조



일자형 구조

6 리허설 및 최종 점검

가. 후보자는 리허설을 통해 토론회 진행순서 및 소요시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 사회자나 토론위원회 또는 방송사 관계자의 주의사항을 경청한다.

나. 리액션 샷(Reaction shot)²의 활용 여부를 미리 토론위원회에 문의한다.

2. 리액션 샷(Reaction shot) : 한 후보자가 발언을 할 때 이를 듣는 다른 후보자들의 표정 및 동작 등을 잡아주는 화면.

다. 후보자에게 제공되는 메모지, 필기구 및 생수 등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휴대폰 전원을 끄고 복장 등을 점검한다.

- 1) 넥타이, 핀마이크 착용 상태
- 2) 머리 빗질 상태

마. 후보자는 리허설을 마치고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준비한 자료를 다시 검토한다.

※ 진행방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리허설을 마친 후 방송사나 토론위원회 관계자에게 확인한다(방송 중에 진행방식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리허설의 필요성

- 사회자와 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송사 스태프와 카메라, 마이크, 음향 및 스튜디오 설비 등을 활용하여 본 토론회와 똑같은 조건에서 한다. 이때, PD는 진행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사회자에게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주문을 하게 된다.
- 후보자들이 각자 자리에 위치한 상태에서 간단한 말을 하도록 하면서 마이크와 오디오 상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시정한다.
- 리허설을 통해 후보자는 목소리, 표정, 자세, 몸짓 등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인지할 수 있다.
- 후보자는 자신을 전담하여 촬영하는 카메라가 어느 것인지 확인 할 수 있다.

7 토론회 진행

가. 사회자가 오프닝 멘트에 이어서 후보자를 소개하면 지정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가볍게 목례를 한다.

나. 토론회 방송이 시작되면 후보자의 마이크는 계속 작동 중이므로 기침 소리 등 잡음이 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선거방송토론은 발언시간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설치된 타이머(토론시간 관리시스템)의 잔여시간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한된 발언시간(발언을 시작 한 때부터 타이머 작동)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 타이머상의 발언시간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토론에 방해가 될 수 있음.

라.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규정 §10①)

마. “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규정 §10조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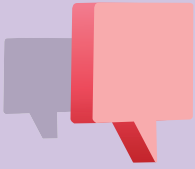
바. 후보자 상호토론 시 발언권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을 가볍게 들어 발언 의사를 표현한다.

사. 토론회 방송 직전 또는 진행 시 가급적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좋다.



후보자 유의사항

- 후보자는 가급적 배정된 발언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토론시간이 남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른 후보자가 발언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 주제나 질문사항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발언하지 않는다.
 -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는다.
 - 토론회 진행을 방해하거나 토론회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
 - 토론위원회 관계자 또는 사회자의 제지나 중지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참고자료



1.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예시
2. 토론진행표(큐시트) 예시
3. 사회자 대본 예시
4. 선거방송토론 법규



1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예시

후보자 : 2인

방송시간(토론시간) : 60분(58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 후보자(각 2분) 	4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및 건전성 확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구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및 노인일자리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 	
<공약검증 토론> 후보자 공약발표 후 개별·보충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후보자 공약발표(2분)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30초)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 · A 후보자 공약발표(2분)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30초)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 	12분
후보자 개별·보충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30초)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 ·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30초)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30초) 	8분
마무리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 후보자(각 2분) 	4분

후보자 : 3인

방송시간(토론시간) : 90분 (71분)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 A/B/C 후보자(각 1분)	3분
사회자 공통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재정난 해결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 성공개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30초)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 안전도시 조성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30초)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30초)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15분
<공약검증 토론> 후보자 공약발표 후 개별·보충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후보자 공약발표(3분)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 • B 후보자 공약발표(3분)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 후보자 공약발표(3분)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보충답변(1분)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보충답변(1분) 	27분
주도권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주제 • B/C/A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5분) ※ 1회 1분 정도 발언, 답변 1분 보장 	15분
마무리발언	• C/A/B 후보자(각 2분)	6분

후보자 : 4인

방송시간(토론시간) : 90분(66분30초)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 A/B/C/D 후보자(각 1분)	4분
사회자 공통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6분 30초
사회자 개별질문 (사전추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문화재 보존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30초) ○ 퇴직자의 인생 재설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D 후보자 답변(1분30초) ○ 교통난 해소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30초) ○ 신성장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30초) 	8분
<공약검증 토론> 후보자 공약발표 후 개별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 후보자 공약발표(1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D 후보자 답변(1분)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D 후보자 답변(1분)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D 후보자 답변(1분) • A 후보자 공약발표(1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D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 B 후보자 공약발표(1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D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 C 후보자 공약발표(1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D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24분
주도권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D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의 이상 후보와 토론하고, 한명의 후보자와 총 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사회자가 제지함. 질문은 1분 정도, 최소 답변시간 1분 정도 보장 	20분
마무리발언	• B/C/D/A 후보자(각 1분)	4분

2 토론진행표(큐시트)³ 예시

2000. 0. 0 (17:30~18:45)개최, 00선거구 후보자토론회

번 화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누적)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10초	17:30:00	VT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후보자 소개	1분30초	17:31:30	MC/ S/T	○○○ 사회자
3	진행방식 설명	○ MC 토론 진행방식 설명	1분	17:32:30		
4	시작발언	☞ 사회자 Bridge ○ A/B/C 후보자 시작발언(각 1분)	3분30초	17:36:00	S/T	
5	사회자 공동질문	1. <지역현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11분	17:47:00	S/T	A 후보자 (정당명)
		2. <지역현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6	후보자 개별질문	<자유주제> A 후보자 개별질문(1분) → B 후보자 답변 (1분30초) A 후보자 개별질문(1분) → C 후보자 답변 (1분30초) B 후보자 개별질문(1분) → C 후보자 답변 (1분30초) B 후보자 개별질문(1분) → A 후보자 답변 (1분30초) C 후보자 개별질문(1분) → A 후보자 답변 (1분30초) C 후보자 개별질문(1분) → B 후보자 답변 (1분30초)	16분	18:03:00	S/T	B 후보자 (정당명) C 후보자 (정당명)

3. 큐시트(cue-sheet) : 큐시트는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진행표로 방송 시작에서 종료까지 카메라, VTR, 음향 담당자 등 제작 스텝들이 해야 할 일을 시각적으로 대표화한 것이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누적)	영상	비 고
7	사회자 공통질문	3. <OOO 정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5분30초	18:08:30	S/T	
8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후보자 자질 및 공약> C 후보자 자유지정질문(30초) → 지정후보자 답변(1분30초)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지정후보자 보충답변(1분) A 후보자 자유지정질문(30초) → 지정후보자 답변(1분30초)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지정후보자 보충답변(1분) B 후보자 자유지정질문(30초) → 지정후보자 답변(1분30초)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지정후보자 보충답변(1분)	12분	18:20:30	S/T	A 후보자 (정당명) B 후보자 (정당명)
9	후보자 주도권 토론	<자유주제> ○ A/B/C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6분) ※ 가급적 1분 이내 질문·답변	19분	18:39:30	S/T	C 후보자 (정당명)
10	사회자 공통질문 (예비질문)	4. <OOO 제도>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4분	-	S/T	
11	마무리 발언	☞ 사회자 Bridge ○ B/C/A 후보자 마무리발언(각 1분) ※ 시간이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 조 정 가능	3분30초	18:43:00	S/T	
12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1분	18:44:00	S/T F.S	
13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8:44:10	VTR	

3 사회자대본 예시

2000. 0. 0 (17:30~18:45)개회, 00선거구 후보자토론회

번호	항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1	타이틀	10초		CG	# 제8회 동시지방 선거 후보자토론회 # 주관: 00선거 방송토론위원회
2	오 프 닝	17:30:00 ~ 17:31:30 (1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명) 후보자토론회” 사회를 맡은 000입니다. • 이제 선거가 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는 초청대상 후보자 세분이 참석하셨습니다. • 사전에 추천된 순서대로 제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	- 사회자: 000 • 근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 국회 소속의원 5인 이상 정당 추천 - 직전선거 득표율 100분의 30이상 정당 추천 - 최근 4년 이내 선거의 유효득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득표한 후보자 - 언론기관 여론조사 지지율 100분의 5 이상
			• 기호 3번, (정당명) A 후보입니다.	A 후보	- A 후보자(정당명)
			• 기호 2번, (정당명) B 후보입니다.	B 후보	- B 후보자(정당명)
			• 기호 1번, (정당명) C 후보입니다.	C 후보	- C 후보자(정당명)

번호	항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3	진행방식 설명	17:31:30 ~ 17:32:30 (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명) 후보자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발언을 듣고, 사회자 공통 질문이 이어지고요, 후보자가 다른 후보에게 개별질문하는 시간, 그리고 후보자가 상대 후보를 자유지정하여 개별질문을 할 수 있는 상호토론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토론 후에 마무리발언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 진행방식 - 시작발언 - 사회자 공통질문 - 후보자 개별질문 -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 주도권토론 - 마무리발언
4	시작발언	17:32:30 ~ 17:36:00 (3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 후보자들에게 시작발언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A 후보자부터 시작발언 시작해주시요. ☞ (정당명) A 후보 시작발언(1분) 다음은, B 후보자 시작발언입니다. ☞ (정당명) B 후보 시작발언(1분) 마지막으로 C 후보자 시작발언입니다. ☞ (정당명) C 후보 시작발언(1분) 네, 세 분의 시작발언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후보자(정당명) - B 후보자(정당명) - C 후보자(정당명)
5	사회자 공통질문	17:36:00 ~ 17:47:00 (1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OO지역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가능해 볼 수 있도록 "지역 현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통질문 1) 후보자당 답변시간은 1분30초입니다. 답변은 B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정당명) B 후보 답변(1분30초) 다음으로 C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명) C 후보 답변(1분30초) 	사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 지역현안1 - B 후보자(정당명) - C 후보자(정당명)

번호	항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5	사회자 공통질문	17:36:00 ~ 17:47:00 (1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지막 A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명) A 후보 답변(1분30초)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주제 : 지역현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질문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당 답변시간은 1분30초입니다. 답변은 C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정당명) C 후보 답변(1분30초)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A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명) A 후보 답변(1분30초)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지막 B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명) B 후보 답변(1분30초)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6	후보자 개별질문	17:47:00 ~ 18:03:00 (16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어서 후보자간 개별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토론주제는 자유입니다. 후보자당 기회는 한번씩 주어지고, 질문시간은 1분, 답변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사회자	- 토론주제 :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럼 먼저, A후보자부터 B후보자에게 질문하십시오. ☞ (정당명) A 후보 질문(1분)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을 받은 B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B 후보 답변(1분30초)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A후보자는 C후보에게 개별질문 하십시오. ☞ (정당명) A 후보 질문(1분)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을 받은 C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C 후보 답변(1분30초)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으로 B후보자, C후보자에게 질문하십시오. ☞ (정당명) B 후보 질문(1분)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을 받은 C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C 후보 답변(1분30초)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B후보자는 A 후보자에게 질문하십시오. ☞ (정당명) B 후보 질문(1분)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을 받은 A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A 후보 답변(1분30초)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지막, C 후보자 A후보에게 질문하십시오. ☞ (정당명) C 후보 질문(1분) 		- C 후보자(정당명)

번호	항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6	후 보 자 개 별 질 문	17:47:00 ~ 18:03:00 (16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을 받은 A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A 후보 답변(1분30초)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후보자는 B 후보자에게 질문하십시오. ☞ (정당명) C 후보 질문(1분)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을 받은 B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B 후보 답변(1분30초)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7	사 회 자 공 통 질 문	18:03:00 ~ 18:08:30 (5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서 세 번째, 공통질문 “OOOO”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주제 : OO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질문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변은 B 후보자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당명) B 후보 답변(1분30초)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C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명) C 후보 답변(1분30초)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A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명) A 후보 답변(1분30초)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8	후 보 자 자 유 지 정 개 별 질 문 후 보 총 질 문	18:08:30 ~ 18:20:30 (1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에는 후보자로서 자질과 공약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회자	- 토론주제 : 후보자 자질 및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가 상대 후보를 지정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 진행방식 :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후보총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질문당 주어진 시간은 역시 30초, 답변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하고,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럼, C 후보자부터 시작해주시지요 어떤 후보를 지정하여 질문하겠습니까? ☞ (정당명) C 후보 질문(30초)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 후보자 보충질문하거나 또는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 (정당명) C 후보 질문(30초) 		- C 후보자(정당명)			

번호	항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8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후보 보충질문	18:08:30 ~ 18:20:30 (1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으로, A 후보자부터 시작해주시지요. 어떤 후보를 지정하여 질문하겠습니까? ☞ (정당명) A 후보 질문(30초)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후보자 보충질문하거나 또는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 (정당명) A 후보 질문(30초)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지막으로, B 후보자 시작해주시지요. 어떤 후보를 지정하여 질문하겠습니까? ☞ (정당명) B 후보 질문(30초)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후보자 보충질문하거나 또는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 (정당명) B 후보 질문(30초) 		- B 후보자(정당명)
9	주 도 권 토 론	18:20:30 ~ 18:39:30 (19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토론입니다. 각 후보자께 6분 동안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공약과 정책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듣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주도권토론 : 후보자당 각 6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럼 순서에 의해, A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작해주시죠. ☞ (A후보자 주도권토론) : 6분 		- A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작해주시죠. ☞ (B후보자 주도권토론) : 6분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C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작해주시죠. ☞ (C후보자 주도권토론) : 6분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토론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번호	항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10	마 무 리 발 언	18:39:30 ~ 18:43:00 (3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순서, 마무리발언입니다.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면 마무리발언 시간조정 • 각 후보자께,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후보자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 먼저, B 후보자부터 시작해주시시오. 	사회자	- 마무리발언 : 각 1분
			☞ B 후보 마무리발언(1분)		- B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 C 후보 마무리발언(1분) 		- C 후보자(정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 A 후보 마무리발언(1분) 		- A 후보자(정당명)
			• 이렇게 해서 마무리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사회자	
11	클 로 징	18:43:00 ~ 18:44:00 (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명) 후보자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간단한 목례 후, 후보들과 인사) 	사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롤 자막 - 위원장 - 위원, 사무국장

4 선거방송토론 법규

「공직선거법」

제정 1994. 3. 16. 법률 제 4739호

개정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5.8.13., 2022. 1. 2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상파방송사(공영방송사가 아닌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

1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개정 2010.1.25.>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도
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
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
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
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삭제 <2004.3.12.>

2. 삭제 <2004.3.12.>

3. 삭제 <2004.3.12.>

② 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
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성명·사무소 소재지·회원수·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
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
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 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⑧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8.4.30.>

⑨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14.>[제목개정 2000.2.16.]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0.2.16., 2005.8.4., 2007.1.3.,

2008.2.29., 2009.7.31., 2010.1.25.>

② 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 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2항·제6항·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16.>[제목개정 2000.2.16.]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

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

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2018. 4. 6.>

㉗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㉘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㉙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㉚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22. 1. 21.>

㉛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 또는 지상파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 8. 4., 2022. 1. 21.>

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20.12.29.>

㉝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㉞ 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칭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별표 3] (규칙 제143조제2항 관련) <개정 2022.1.26>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만원)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3의5.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행위	○ 법 제261조제3항제3호의3· 법 제82조의2제4항	1,000	가. 매회 : 1,000

제정 1962. 12. 31. 법률 제1246호

개정 2022. 1. 21. 법률 제18792호

제39조(정책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7항 내지 제9항·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4. 3. 12. 중선관규칙 제211호

개정 2022. 1. 26. 중선관규칙 제54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2조의2(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파방송사: 「방송법」 제2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 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만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이 경우 해당 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원수가 많은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26.]

제3조(협조요구)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등”

이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8. 12. 23., 2022. 1. 26.>

② 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등과 관련기관·단체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6.>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1.25.>

제5조(직무)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②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③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0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제5조의2(사무의 대행)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8.4.]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0.1.2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등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2.1.26.>

③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상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상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6조의2(지상파방송사의 위원 추천)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지상파방송사는 해당 시·도토론위원회의 관할구역(이하 이 조에서 “관할구역”이라 한다)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의 방송구역이 넓은 방송사가 추천하되, 방송구역이 같은 때에는 지상파방송시간 합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2. 1. 26.]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 1.25.>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8조(상임위원)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③ 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9.11.22., 2022.1.26.>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공영방송사등이 추천한 위원으로서 그 추천공영방송사등의 요구가 있는 때
6. 법 제8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선거관리위원회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해촉 또는 파면된 때
7.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0.1.25.>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도토론위원회 및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16., 2008.3.24.>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14조(위원회의)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각급 토론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간사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④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15조(위원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토론의 진행방식, 주제·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5.>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 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제3장 사무기구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토론키획팀, 방송토론팀, 토론문화팀을 둔다. <개정 2018.1.19.>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2013.11.25., 2014.5.27., 2018.1.19.>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5.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6. 시도토론위원회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8.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9.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0.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제20조(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홍보과장을 두지 아니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8.1.19.>

② 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3.11.25., 2018.1.19.>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1.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① 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장,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1.25., 2018.1.19.>

② 간사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선거과장 또는 선거담당관을 두고 있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과장 또는 선거담당관을 간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2019. 11. 22., 2021.10.22.>

③ 간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2018.1.19.>

1.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 [제목개정 2018.1.19.]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 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대담·토론회) 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

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 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⑥ 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대담·토론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2016.1.1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⑧ 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초청 외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초청 외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초청 외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10.1.25., 2019.11.22.>

⑨ 각급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급토론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신설 2018. 4. 6.>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①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정책토론회) ① 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8.1.19.>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 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 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0.1.25.>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 공영방송사등은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 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③ 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22.1.26.>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등과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⑤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반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5.>

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 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 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2022.1.26.>

1. 삭제 <2022. 1. 26.>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 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1.25>

제33조(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

2021. 9. 2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2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6항에 따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의 주관·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2조(사회자의 선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 토론회의 사회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사회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제3조(질문자의 선정) ①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③ 질문자는 해당 토론회 시작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토론자(후보자, 해당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토론자”라 한다) 또는 그 관계자와 토론회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9.23.>

제4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 등) ①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참석할 토론자의 수를 예상하여 단일 또는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토론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대통령의 권유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3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 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통지한 후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 초청대상 정당의 변경 또는 토론자의 불참 통보 등으로 참석 예정인 토론자 수가 달라지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진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④ 제3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제5조(질문사항의 수집과 공개여부) ① 토론위원회는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수집하여 토론회의 질문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론위원회는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하되 토론방법 등에 따라 질문사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토론회장의 설비) ① 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참석대상 후보자·정당(이하 “후보자·정당”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토론회장 설비 내용을 개최일 전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토론자와 사회자, 질문자 등의 위치

2. 토론자와 사회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등 기타 토론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개정 2021.9.23.>

② 토론회장은 토론자간에 차이가 없도록 공정하게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③ 토론위원회는 후보자·정당이 불참을 통보하여 오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좌석 등을 설비하지 아니하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좌석 등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7조(토론회의 청중)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의 설비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중을 둘 수 있다.

1. 일반 유권자

2.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의 회원 등

3. 토론위원회가 참석 후보자·정당에게 균등하게 추천을 의뢰한 인원 <개정 2021.9.23.>

② 청중은 토론회의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토론자의 착용·부착물)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토론자가 법 제68조의 선거운동용 윗옷·어깨띠를 착용·부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선전구호 등을 게재한 표시물(소속 정당의 배지를 제외한다)을 착용·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21.9.23.>

제9조(참고자료의 사용<개정 2017.1.23.>) ① 토론자는 토론회에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7.1.23., 2018.1.12.>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전자기기를 제공한 경우 토론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기기의 종류,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9.12.24.>

제10조(토론회의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사전에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질문사항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④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토론자가 불참하거나 참석 토론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한다.

제11조(중계방송) ① 토론회의 중계를 주관하는 방송사(이하 “중계주관방송사”라 한다)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법 제8조의5에 따

른 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한다)의 토론회 중계방송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계주관방송사가 토론회의 방송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면구성은 토론자간 최대한 균등하도록 한다.

2. 시작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발언하는 토론자만을 비추도록 한다. <개정 2021.9.23.>

3. 토론회의 중계 도중 선거관련 속보를 자막 등의 형태로 방영할 수 없다.

③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녹화방송으로 방영하는 경우 방영 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자막으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12조(재방송 및 다시보기<개정 2019.12.24.>)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에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하게 하거나,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발언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토론회의 재방송 및 다시보기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4.>

[전문개정 2019.12.24.]

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 삭제 <2021.9.23.>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1991. 3. 8. 법률 제 4347호

개정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9.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10.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11.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제3항, 제135조의2제2항·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제5항 전단·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한다.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제2항·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0.2.2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길잡이

개정판 발행 | 2022년 5월

발행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
T (02) 3299-3831
F 0505-058-1173
H <https://www.debates.go.kr>

디자인·인쇄 | 렛츠디자인 (031) 903-8658

열린 토론 바른 선택



홈페이지

